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032	34 111

결성식 자료집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주요 연락처

곽노현 교수 3668-4596

남규선 총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인권운동사랑방 741-5363

일 시 : 1998년 9월 17일 오후 1시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결성식 자료집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일 시 : 1998년 9월 17일 오후 1시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1988년 10월 10일 발행
1988년 10월 10일 발행

차 례

시작하는글	4
경과보고	6
사업계획	8
조직구성	10
기자회견문	11
자료1 (곽노현 교수글)	15
자료2 (신문스크랩)	18

시작하는 글

최근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을 맞이하여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결함을 바로잡고,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존중의 사회로 가는 것이 그 목표일 것입니다.

93년 세계인권회의 당시부터 유엔이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촉구해온 민간단체는 김대중 정부가 100대 과제에 하나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제의하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와 일체의 협의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만든 법무부안을 토대로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보면서 실망과 놀라움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 법무부 검사가 밀실에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낸 법안이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존중을 위한 기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부안은 그 내용에서도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 시정하고 다른 국가기구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모습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그 내용 중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특수법인의 형태는 일반 국가기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형태로서 법무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식의 권고적 권한만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시정·근절이라는 애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 노동, 청소년, 장애인, 빈민, 양심수, 사회복지 등 각 영역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애써온 30여개 인권·노동·여성·종교·시민·사회 단체는 9월 17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입법추진과정을 바로잡고, 국민적 토론을 시작하고자 '민간단체 공동추진위'를 결성합니다.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관심있는 관련단체의 참가를 적극 권유, 환영합니다.

결성식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 광주인권지기 (회장 이동균)
-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대표 허창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창복)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곽노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
-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표 박천웅)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갑용)
-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대표 문규현)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전우섭)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박승원)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공동대표 이현숙)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정옥)
- 한국교회인권센터 (인권위원장 이명남)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회 (공동대표 오충일)
-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대변인 박두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은희)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회장 신혜수)

이상 29개 단체

경과보고

경과 보고

- ◆ 93년 6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대위가 유엔세계인권대회(비엔나)에 참가하며 정부에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민간단체의견서를 통해 요청, 공표함. (1992. 3.3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로 한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하여 연구, 조사, 건의 및 교육과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 ◆ 94년 7월 18일 ~ 20일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샵(유엔 인권위 주최, 서울) 참가, 국가인권기구 설치 제안 및 요청
- ◆ 95년 11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내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서울)에서 100여 국내의 참가자들과 함께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제안, 요청
- ◆ 96년 11월 제 2차 아태지역 인권대회(뉴델리)에 참가 및 국가인권기구 워크샵 개최
- ◆ 97년 11월 23일 ~ 12월 1일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 조사 방문
- ◆ 98년 3월 5일 국가인권기구 주제로 광노현 교수 초청 인권워크샵 개최(인권협)
- ◆ 98년 5월 21일 국가인권기구 토론회 개최('과거청산 과제와 국가인권기구의 방향', NCC 인권위, 백주년 기념관)
- ◆ 98년 6월 2일 제 1차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워크샵 개최(민변 회의실)
- ◆ 98년 6월 23일 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기구 전문가(멜 제임스 변호사) 초청 공개토론회 개최('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 ◆ 98년 7월 13일 제 2차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워크샵 개최(민변 회의실)

- ◆ 98년 8월 10일 제 3차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워크샵 개최(민변 회의실)
- ◆ 98년 8월 24일 제 4차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워크샵 개최(민변 회의실)
- ◆ 98년 9월 4일 민변, 민교협, 여연 등 15개 단체가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준비위 결성(YMCA) - 빠른 시일 내로 공추위 발족하기로 결정. 공추위 결성을 위한 준비팀 구성. 준비위원장으로 광노현 민교협 공동대표 선임.
- ◆ 98년 9월 7일 ~ 9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자카르타)에 민간단체공추위 대표 단 파견
- ◆ 98년 9월 10일 공추위 결성을 위한 준비팀 회의 개최
- ◆ 98년 9월 11일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과정과 법무부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 전달과 협의를 위해 대통령 및 법무장관 면담 요청, 민간단체 의견서 송부.
- ◆ 98년 9월 14일 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민간단체들의 긴급 건의서 법무장관에 송부
- ◆ 98년 9월 15일 - 민변, 민교협, 여연 등 14개 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를 통해 공추위 발족 및 기자회견 일정 확정. 광노현 교수를 공추위 집행위원장으로 추대.
- ◆ 98년 9월 17일 29개 단체가 모여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기독교교회관)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공추위의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의견서·민간단체 법안 기초, 둘째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셋째 국내외 관련당사자들과의 대외협력, 넷째 부문 및 지역조직 확산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공추위는 이러한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서·민간단체 법안(국민안) 기초

가. 법무부의 법안(특수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대안 제시를 포함한 민간단체 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에 관계당국에 송부할 예정이며 국민앞에 보고할 것이다.

나. 인권법과 인권기구의 법체계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법이론적 이해에 입각하여 민간단체 법안을 성안하여 내부심의과정을 거쳐 공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변 등 법조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2.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가.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대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나. 대국민홍보용 전단 및 교육홍보자료집을 제작, 배포한다.

다. 각 부문 및 지역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에 대한 설명, 토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의 법학계와 법조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낸다.

라. 구성단체 기관지, 중앙 및 지방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의 뉴스사토론프로그램등에 취재, 기고, 출연, 인터뷰,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등을 통하여 공론화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3. 대외협력

가. 국민 주체의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정부, 정당, 법학계, 법조계 등 관련기구 및 단체와 대외협력업무를 전개한다.

나.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제사회에 공추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뉴스를 제작·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토론을 독려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적 지원을 조직해내고, 나아가서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립을 검토 중인 여러 주변국가들과 민간단체들 그리고 국제인권법학계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4. 부문 및 지역 조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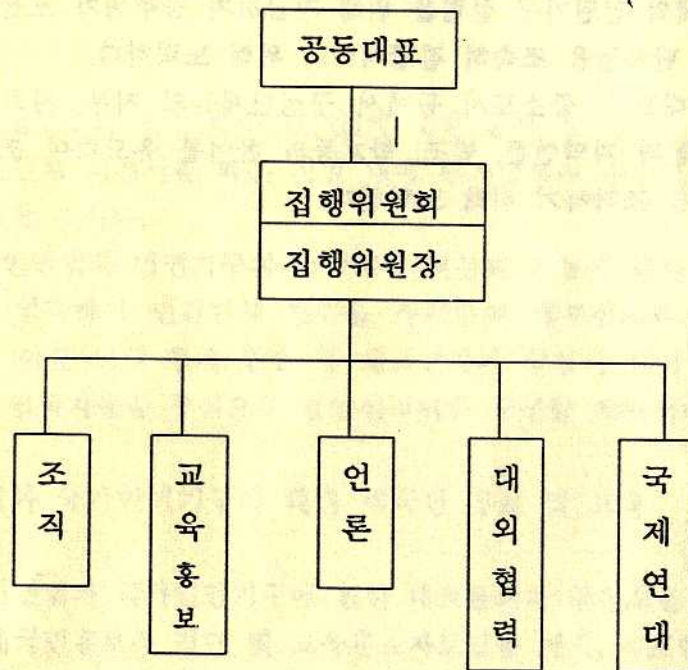
가. 국민 주체의 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공추위가 포괄하지 못한 지역과 부문의 단체들을 조속히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나. 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서 구성단체들의 지부, 지회들을 중심으로 지역단체들과 지역언론, 법조, 학계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지부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직구성

조직 구성

- 공동대표단 : 공추위 참가단체대표자 각 1인으로 구성
- 집행위원회 : 공추위 참가단체 1인으로 구성
- 집행위원장 : 곽노현 교수 (방송통신대 법학, 민교협공동의장)
- 실무단위 : 조직(부문·지역)/ 교육·홍보/ 언론/ 대외·협력/ 국제연대로 구성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상근 1인·반상근 1인, 민주법연에서 반상근 1인이 결합 가능하다 밝힘. 그의 단체에서도 상근·반상근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알아보기로 함.



기자회견문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온 우리 민간단체들은 오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배경과 이유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참여를 부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경제위기와 정치적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많은 사건들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언론기관에서도 이 일이야 말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바로잡는 일임을 깊이 인식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단편적으로 보도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의 남용과 가부장적인 폐습에서 오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부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배려를 받지 못한 채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때로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조차도 드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식 또한 미약한 실정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법제정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의 결함을 바로잡고 국가 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며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바로 세우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 바로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은 이미 1993년 세계인권회의 이후 유엔이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운동과정에서 김대중후보의 국민회의가 이를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것 역시 그 동안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립을 김대중정부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또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이 이를 국제 사회에 약속한 데 대하여 환영하고 기대를 걸어 왔습니다. 사실 정부수립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였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올해야말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데 참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회, 정당 등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시작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일체의 협의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만든 법무부 안을 토대로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면서 실망과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김대중대통령 자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새정부의 국정좌표로 내걸었고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민주적 토의과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노력"이라는 진리를 되풀이하여 확인하고 있으면서도(대한민국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55쪽)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민주적 토의과정과 공감대 형성노력"을 중시해야 할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법무부의 밀실행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를 통하여 정부가 진실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겸손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무슨 일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겸허한 반성과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반성과 토론이 없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일부 법무부 검사들이 밀실에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낸 법안이 과연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미래를 향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절차와 과정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만 올바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건 관료들의 밀실행정이 원래 의도한 결과 대신 관료들의 집단이익을 반영하고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폐해를 우리는 신물나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그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한 관주도의 권위주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개해야 할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국정의 좌표로 내건 "국민의 정부"에서,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마당에까지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알려진 법무부의 안은 그 내용에서도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 시정하고 다른 국가기구를 감시, 견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권단체들은 정부의 권위주의식 입법추진과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느끼고 오늘 모여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과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국민적 토론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인권법의 내용과 우리 사회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은 그러한 고민과 토론과정에서 국민들의 지혜가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맞추어 국가인권기구를 출범시켜야겠다는 정부당국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형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한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피해자를 대변하고 고민해 온 민간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외면, 의구심 속에 출범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 일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기대와 축하를 받으면서 시작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관료적 독단과 자화자찬 속에서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김대중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를 모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부서차원의 인권법안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부서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등 법무부의 입장을 기정 사실화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2. 대통령은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범사회적 인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보장하라.

1998년 9월 17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자료 1

법무부의 국가인권기구안, 무엇이 문제인가?

곽노현(방송대, 법학)

지난 9월 9일 법무부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협의회에서 한국은 금년 중으로 인권법을 제정할 방침이며 내년 6월경에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살짝 선보인 법무부안에 따르면 향후 설치될 국가인권기구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며 권고적 권한만 가질 모양이다. 쉽게 말해서 법무부가 그려 놓은 국가인권기구는 소비자보호원류의 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류의 권한을 갖는 약체 법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위에서 살펴본 법무부안의 골간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결정적인 결함과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법무부안은 합목적적이지 못하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근거법령에 의해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각종 공기업들이 과연 독립성과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실제로 법무부가 힌트를 얻었다는 소비자보호원만 해도 안팎의 평가가 모두 재경부의 산하기관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진실로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인권위원들의 신분을 법관의 예에 따라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성격상 국가권력의 실질적 수장인 대통령의 국가인권기구 장악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감시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는 모순에 빠질 터이다. 벌리상으로도 이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인 거래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는 쌍방대리금지원칙이나 자기 자신을 대리할 수 없다는 자기대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요컨대 사법권한을 지닌 모든 국가기관에 요구되는 강력한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반적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임명권한과 절차의 민주화 정도, 강력한 신분보장제도의 완비, 그리고 기관구성원의 결연한 수호의지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지 특수법인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는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특수법인의 성격상 아무래도 정식 국가기구보다는 위상이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차별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선진국형 인권위원회에 속하는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위신에 관련되는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다.

특수법인 형식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잣대는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인권기구가 과연 국가인권기구의 헌법기구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등 기존의 통치구조로는 국민의 인권 보장에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법체계론적 성찰의 결과로 유엔인권기구가 고안해낸 인권보장 전담 국가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한 구조적 인권침해를 오랜 기간 강도높게 경험한 국가일수록, 다시 말해서 근대헌법의 일반적 기본권 보장장치의 무기력과 한계를 절감한 국가일수록 국가인권기구를 헌법에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민주화 이행기의 헌법 전면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헌법기구화한 필리핀과 남아공이 좋은 예다. 국가인권기구가 헌법기구로 올라있건 단순히 법정기구이건 상관없이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헌법기관을 위시한 모든 국가기관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에 힘쓰는 기능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적 기능은 바로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정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등 기존의 헌법기관들을 감시, 견인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인권기구의 법체계적 지위는 기존의 헌법기관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언제든지 인권 억압자로 돌변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국가기관의 자리낮춤과 국민인권의 자리높임에 의해 국가권력을 확실하게 국민인권의 전방위적 봉사기관으로 위치지우는 것, 바로 이것이 국가인권기구의 법체계적 사명이자 법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국가인권기구를 헌법에 의해 설치하건 법률에 의해 설치하건 전혀 변함이 없다.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속성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설사 우리나라의 국가인권기구가 헌법개정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둔다고 해도 그 실질적 기능이 최소한 다른 국가기관들의 감시, 견제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법정 국가기구보다는 한차원 높은 준헌법기구적 위상을 갖는 것으로 봐야 마땅할 것이고, 근거법률에서 도출되는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위상도 준헌법기구로서의 실질적 위상에 근접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가인권기구가 실질적으로는 세계헌법의 기본권편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요청에 뿌리박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안이 예정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인권기구가 과연 국가인권기구 본연의 준헌법적 혹은 국제법적 위상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선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법리상 반드시 법인 업무와 관련된 주무부서, 곧 감독관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감독관청의 산하기구화하며 독립성을 잃기 쉽다. 국가인권기구의 경우 감독관청은 법무부가 된다. 수사와 행정과정에서 법무당국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기능을 부여받은 기구가 정작 법무당국의 감독을 받는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인권현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냉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국가인권기구에 필요한 것은 독립성과 양립할 수 없는 감독관청의 존재가 아니라 눈을 부릅뜬 개

어있는 국민과 민간단체의 존재다. 아무튼 특수법인의 형태로는 일반적 법정 국가기구의 위상에도 미치지 못하기 쉽다.

권한도 문제다.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는데 그친 이유를 법무부는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혹시 국가기관의 산하 특수법인이 정식 국가기관들에 대해 무슨 수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렇지 않다면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법리가 있어야 하는데 과문한 탓인지 아직까지 이런 법리를 들어본 바 없다. 이런 법리가 성립한다면 법원도 존재할 수 없다. 물론 국가인권기구는 엄밀한 의미의 법원이 아니다. 법관으로 구성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관으로 구성되지 않은 기구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위원회 처럼 준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도 준사법권을 갖는 것이니 이 점에서 차이는 없다. 물론 주로 사기업에 대해 발동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위원회의 준사법권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준사법권은 주로 국가기관에 대해 발동되는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는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국가인권기구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를 경우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사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침해자의 성격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달리하는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전근대적인 관존민비 사상의 발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도 법리로 보건 법감정으로 보건 법치와 민주주의에 보다 투철해야 마땅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옳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기구는 그 속성상 다른 법정 국가기구보다 한단계 상위 차원의 준헌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구들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과감하게 시정명령을 내려도 법리상으로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한편 시정명령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를 내려도 국가기관들이 거의 모든 경우에 따를 것이라는 법무부의 예측도 정부와 인권단체들간에 사태 인식과 법적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준법서약제와 같이 정부의 대내외적 위신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되풀이해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보호원류의 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류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의 국가인권기구안은 너무 약체 기구를 상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권보장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독립성과 실효성 양자에서 크게 함량 미달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국가인권기구의 헌법보완적 성격과 준헌법기구적 위상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인권법안을 손질하기 촉구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민주적 정권교체 원년과 헌법제정 및 세계인권선언 반세기를 맞아 인권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요한 커다란 초석 하나를 놓은 것으로 역사가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다.

자료 2

신문스크랩 자료

제750호 (2면 발행)

일간(일·월요일 제외)

1996년 10월 23일 (수요일) [1]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동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의 ‘국민인권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답변을 통해 “97년말까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국민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기구로 도입 검토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인권위원회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97년말까지 법무·노동부·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담당부서의 한 관리는 “아직까지 부서 내에서 국민인권기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인권문제는 민간단체가 알아서 하는데 굳이 정부기구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인권기구가 생긴다면 어차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역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입장 대변역할 우려 법무부의 추진상황과는 별도로 국민인권기구는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무부의 답변만을 살펴 보면 ‘인권위원회’의 구성에는 민간인권단체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리는 민간단체를 일부러 배제

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대변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제기된 국민인권기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구체화한다면 국내 민간인권단체의 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 독립성 보장의 핵심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인권기구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91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파리 원칙’이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93년 2월 유엔 인권위에서 승인되었다. ‘파리 원칙’에 따르면 국민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인권보호와 신장에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보고서, 권고안, 제안문을 만들어 정부, 의회 등의 국가기구에 제출하고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국제인권규약을 가입·비준하도록 권장하고 △인문과 교육을 통해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의 논의사항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독립성의 문제이다. 국민인권기구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그 구성에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간인권단체의 참여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인권기구는 현재 약 30여 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인권위원회의 형태이며, 음부즈먼, 중재자, 민중의 옹호자라는 유사한 기구도 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차별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주로 다룬다.

일간(2면 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월 16일(금)

제 1044 호

발행처 : 인천동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새 정부에서 ‘국민(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인권위원회’의 설치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인권단체 등에서만 간헐적으로 주장해온 국민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인권기구 또는 국민인권위원회의 대한 밑그림은 공개된 것이 없다. 지난 95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장관이 “97년말까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금도 “연구검토중”이라고만 밝힌 뿐이다.

집권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존의 국가기구와는 독립된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법무부 인권과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각 지역위원회 등 방대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조직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현재 법무부쪽에선 법무부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해 인권정책에 대한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은 “별도의 국가기구든 법무부 인권과의 확대든 국가인권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민인권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구에서 감당하지 못한 △인권 관련 제도, 정책 연구 △인권 개선안 제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유엔인권위가 세계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인권과제다.

(2면에 국민인권기구 특집)

일간(2면 발행)

980625

인권허투소식(제 1153 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국내 인권정책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토론회에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동성애, 교육, 종교 관련 단체 등에서 60여 명이 참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민간단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앰네스티 멜 제임스(Mel James)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 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인권사안에 대한 보고와 권고 ▲인권침해 고발접수조사 ▲인권법·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한 모니터 활동 ▲인권교육·홍보 등이 주요 기능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의 대상에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의 논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민간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학교폭력, 의문사, 구금시설 문제 등 다양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 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인권사안에 대한 보고와 권고 ▲인권침해 고발접수조사 ▲인권법·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한 모니터 활동 ▲인권교육·홍보 등이 주요 기능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의 대상에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물론,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상의 논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민간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학교폭력, 의문사, 구금시설 문제 등 다양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기능을

인권법 내달 제정

차법무, 訪韓 국제사면위총장에 밝혀

"保安法개정 시기아니다"

차법무(박상천) 법무부장은 10일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언젠가는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을 당장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차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중인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국보법 개정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차장관은 양심수 석방과 준법서약서 철제를 요구하는 사네 총장

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한국이 오는 10월 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10일 이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장관은 또 93년 이후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40건의 '난민 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히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법체임을 단속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980911 <韓宗鎔기자>

"인권법 12월 10일 공포"

박법무, 국제사면위 면담...국보법 모호한 내용 정리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일인 12월10일 인권법을 공포하고, 독립법인인 국민인권위원회를 구성해 공권력 등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10일 오후 방한 중인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사무총장을 만나 "올해 10월 중 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일인 12월10일 인권법을 공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인권문제는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인 국민인권위원회가 감시하게 될 획기적으로 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인권단체의 요구사항과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기준도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두고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 많이 정리됐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언젠가는 모호한 내용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적 조처로 법을 엄격히 해석 적용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비전향장기수 가운데 북한에 있는 가족의 인위를 염려해 준법서약서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을 연구중"이라며 "법무부 나름의 복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통일부 등 다른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들의 처리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980912 김창석 기자

비철 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제법 네스티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10월 중순까지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계 인권선언 50돌을 맞는 12월10일에는 이들 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의 이런 의욕에 찬 발언을 접하여 몇가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주요 뼈대로 하는 인권법 제정문제는 이미 96년 이래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한다. 국민정부가 들어서서는 국가정책 100대 과제 중에 포함시켰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번 미국 방문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이에 관한 약속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런 입법추진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최소한 1년반 정도 각국의 입법실태를 수집하여 독자적으로 준비하여 왔으리라고 추측된다. 적당 기간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내놓고 검토를 받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장관의 발언은 아주 뜻밖이었다. 곧 국회에 제출하여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새로 나오게 될 인권법과 인권위원회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무슨 내용을 갖는 것인지 모르지

논단



강정신

한국법총대 교수·법학

만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그런 것이 불과한가. 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보자. 만약 기존의 국가와 법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새로운 인권법 제정은 전혀 필요가 없

인권법 '국민에 의한' 제정을

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법은 그 목적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적 현실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침해적 성격이 너무 강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해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의 한계는 여전히 너무 컸다. 이런 사실을 감

안해서 국제연합은 과거에 없었던 국민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인류의 권리 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인권법과 위원회는 근대 국가의 한계를 인정하

는 것이자, 각국의 국민들이 국민국가의 힘을 댈어 세계로 나아가 보편적 차원에 있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더 국민이 주인이 되고, 또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명칭도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기본법'을 뜻하여야 하며, 국가위원회도 '국민인권위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의 인권법과 인권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의 신설을 위해서 국가와 정부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잘못 저질러진 과거의 잘못을 먼저 누우치는 겸손한 발언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자리 낮춤으로 인권법과 국가위원회의 바탕을 닦아야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무모한 발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신생 국민정부가 아무리 국민지향의 정부로 자부한다고 하더라도 인권법과 위원회는 행정부 차원을 뛰어넘은 국가권력 일반의 자기 반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현재의 검찰·사법부·경찰·공무원 등 헌법이 명령하는 인권보장의 일선기구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함을 청산하지 않은 이 마당에서 이 법의 일방적 제정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10월 중순까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일반에게 인권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제출하고, 12월10일에는 전 국민의 동의 속에 인권법과 국민인권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그런 축제가 열리는 것을 기대해본다.